

# 강제집행면탈죄

채무자가 진실된 의사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면, 설사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



박종복/변호사

### <질문>

본인은 약 1년전 A로부터 1,000만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다. 그러자 A는 본인의 아파트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. 그런데 본인은 약 5년전 B로부터 돈 3,000만원을 빌려쓰고 B앞으로 위 아파트를 가등기해 놓은 상태이다. B는 B대로 본인에게 돈을 못갚으면 아파트라도 넘기라고 성화가 대단하다. 만약 본인이 지금 B앞으로 본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. A는 이럴 경우 본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.

### <답변>

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, 손괴,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.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가압류, 가처분 등의 집행을 할 구체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. 귀하의 경우는 이미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A에게 패소하여 A로부터 귀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본다.

다음 요건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, 손괴,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. 귀하의 경우 B에게 본등기를 해주는 것이 허위양도라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. 허위양도라는 것은 실제로 재산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부터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 진실한 의사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이상, 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가 아니고 결국 강제집행면탈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관례이다.

귀하의 경우 귀하가 B로부터 돈 3,000만원을 빌려쓴 것은 약 5년전이고 귀하가 A와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약 1년전이라면, 귀하가 아파트를 B앞으로 본등기를 해주더라도 그것은 이미 5년전 채권채무관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해 주는 것이므로 이것을 허위의 양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. B에게 돈을 빌려 쓸 당시 가등기를 해주었다면 지금 아파트등기부등본만 떼어보아도 그 날짜가 5년전 언제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.

결국, B에 대하여 귀하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귀하의 진실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설사 그 결과 A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.

# 97년 개정 세법 안내(2)

## (나)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

### 1) 공익법인 사후관리

#### 가)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

-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이 사용·수익하는 경우(예: 건물의 임대, 금전소비대차 등)는 물론,
-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, 당해 공익법인 및 그 출연자와 특별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임원이 사용·수익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자기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.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이 사용·수익한 때</li> <li>- 공익법인에게 면세한 증여세를 추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세표준: 사용·수익한 출연 재산가액 또는 귀속되는 이익의 상당가액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유지</li> <li>○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, 당해 공익법인 및 그 출연자와 특별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임원을 규제대상에 추가</li> </ul>

※ 특별 관계있는 법인: 출연자 및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자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(예: 30% 이상 출자한 법인 등)

#### 나)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5%이내 보유 의무화

-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의 분산을 유도하여, 결과적으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
- 동일종목의 주식을 5%초과 보유하는 경우 5% 이내에 축소하도록 의무화하고,
- 축소하는 부분은 다른 종목의 우량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여 분산투자를 유도했다.
  - 유예기간: 3~5년
  - 의무위반시: 불이행 가산세(20%) 부과 등

#### 다) 외부전문가의 확인·검사 의무화

-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관련사항의 확인·검사제도의 도입



임 현 식/세무사

< 표 1 >

종 전	개 정
적용대상 : 비상장법인 할증 평가율 : 10% 최대주주의 범위 - 발행주식총수의 1%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-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와의 주식합계가 당해 법인 주식중 가장 많은 주주	상장법인, 장외등록법인을 추가 할증 평가율 : 현행유지 최대주주의 범위조정 -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- 지분을 「10% 이상」 소유한 경우로 대상을 축소

을 통해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

- 외부전문가: 회계사·세무사·변호사

○ 공익법인의 출연재산, 운용수입에 대한 장부롤 상속·증여세 시효기간(10년)동안 보존토록 의무화했다.

\* 외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

- ① 보유자산 50억 미만인 공익법인
- ② 출연자 1인(특수관계자 포함)의 출연재산가액이 전체 출연재산의 5% 미만의 출연재산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

2)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실효성 제고

종 전	개 정
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 개서할 경우 차명시점에 증여의제 과세 - 조세회피목적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움	유예기간 2년이내에 실명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완전면제 - 다만, 배우자·직계존비속·미성년자 명의로 전환시는 과세 유예기간까지 실명화하지 않거나, 법시행일('97. 1. 1) 이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해서는 -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

3)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개선(표 1)

○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간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고,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서

○ 주식분산이 양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이 10% 미만인 경우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했다.

4) 세대생략 상속·증여에 대한 과세강화

○ 1세대를 뛰어넘는 변칙적인 상속·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속·증여세의 현행 평균실효세율 수준으로 할증 과세했다.

종 전	개 정
1세대를 뛰어넘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·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20%를 가산하여 할증 과세 - 다만,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 받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	할증과세율 인상 - 현행 20%→30%

5) 증여세 신고기한 단축 및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

○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무상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신고가 지체될 여지가 적어 신고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고  
 ○ 주기동락폭이 큰 경우 현행방법으로는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평균액 산정기간을 연장했다.

종 전	개 정
증여세 신고기한 - 증여일부터 6개월	신고기한 단축 (6개월→3개월)
상장주식 평가방법 - 1개월간 평균주식가격과 증여일의 주식이격 중 낮은 가격	3개월 평균가액에 의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

## 6)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강화

### ○ 배경 및 목적

- 증여와 같은 경제적 재산이전에 대하여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의제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, 전환사채, 결손법인, 소액주주의 실권주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(제32조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 및 제42조).

### ○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

- 종전에는 부동산 등을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의 시가와 거래대가와의 차이가 30% 이상 되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으나
- 앞으로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%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부당한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.

### ○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

-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인수 또는 취득한 사람이
-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의 가액에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했다.
- 이 경우 증여의제 가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.

증여의제 가액 =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교부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식평가액 - 전환사채 취득가액

### ○ 결손법인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

- 결손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

경우에는 그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증가된 이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했다.

### ○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

- 그동안 아버지의 땅위에 아들 명의로 상가건물 등을 신축하고 아버지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모두 아들의 수입으로 하는 등 실제 땅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.

### - 이번 개정세법에서는

- 이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임대 수입 상당액만큼을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했다.
- 다만, 부모를 모시고 거주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땅위에 아들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.

### - 증여의제되는 무상사용의 범위

-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·사용하는 경우
-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
- 특수관계자와 함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

※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및 이들이 50% 이상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

### - 토지무상 사용이익의 계산방법

- 토지사용 면적의 평가액 × 토지임대 수익률 × 잔존기간

## 7) 기준시가의 현실화 추진

- 부동산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시가 적용을 확대하면서 시가와외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(표 2).

<표 2>

종 전	개 정
원칙 : 시가에 의해 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- 아파트 • 지정지역 : 기준시가 • 일반지역 :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(건물분) - 연립주택(빌라포함) • 지정지역 : 기준시가(건물분) • 일반지역 :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- 기타 건물(상가·오피스텔 등) •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 <신 설>	현행유지  - 기타건물 • 지정지역 : 기준시가(건물분) • 일반지역 : 현행유지  서울특별시(연립 시 포함),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,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 - 매년 12월말까지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  적용예 : '98. 1. 1부터 기준시가 적용

(다) 납세자의 권익제고

산방법을 개선했다.

1) 상속개시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 공제

- 현실적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하게 된 납세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특별손실비용 공제를 신설했다.
- 특별손실비용 공제내용
  - 신고기한(사망후 6월)내에 화재·천재 지변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
  - 다만,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

종 전	개 정
납부(과소납부) 불성실 가산세 - 기본 : 10% - 평가차액에 의한 과소납부분에 대해 가산세 적용 - 미납부기간에 대해 과소납부세금에 연 14.6%를 부과(20%) 한도	현행유지  폐 지

4) 기업상속에 대한 분납기간 연장

-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분납기간을 연장(5년→7년)했다.

2) 상속세 경정청구권의 특례(표 3)

3) 가산세 제도의 개선

- 납세자의 과도한 가산세부담을 경감(현행 최고 50%→30%)하도록 가산세 계

종 전	개 정
상속세 분할납부기간 - 일반 : 3년 - 기업상속재산 : 5년 <신 설>	현행유지  기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% 이상인 경우에는 「5년」에서 「7년」으로 연장

<표 3>

종 전	개 정
당초 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-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「2개월내」 당초 신고된 세액을 감액 경정청구 가능	상속세의 감액 경정청구기한 연장 - 현행 2개월→6개월  부동산이 수용된 가액 또는 최대주주의 주식매각 가액이 당초 상속세 과세시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→정부의 법정 결정기한까지 감액 경정청구 허용